

제200회 임시회  
2002. 5. 14.

도 보 부 록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2002. 5. 14.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4월 27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4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2. 5. 9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 
심의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홍 기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### 【 기업지원과 】

- 석탄산업법 개정(2001. 12. 31)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 이었던 석탄가공업 등록 관련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함.
-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(2002. 2. 4 개정, 8. 5 시행)으로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등 기존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, 충청북도사무의 위임규칙에 의해 시군에 재위임 했던 사무를 재위임 조항에서 삭제하고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를 통해 시군에 위임함.

### 【 농산지원과 】

-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(2002. 1. 14 개정, 4. 15 시행)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감독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함.
- 농어촌정비법의 개정(2002. 1. 14 개정, 7. 15 시행)으로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 기존 농림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, 충청북도사무의 위임규칙을 통해 시군에 재위임 했던 사무를 재위임 조항에서 삭제하고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로써

시군에 위임함.

### 【 원예유통과 】

- 양곡관리법의 개정(2002. 1. 14 개정, 7. 15 시행)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 이었던 양곡가공업의 등록관련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함.

### 【 축 산 과 】

- 수의사법의 개정(2001. 12. 31 개정, 2002. 7. 1 시행)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 이었던 동물병원개설 신고 관련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함.
- 어선법의 개정(2001. 1. 14 개정, 7. 15 시행)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 이었던 어선 건조 및 개조허가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함.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중앙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지사의 권한을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,

위임사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

보면,

- 기업지원과 소관 석탄가공업 관련업무,  
농산지원과 소관 수리계 관련업무,  
원예예유통과 소관 정부양곡 관리업무,  
축산과 소관 동물병원 개설신고등 관련업무와  
어선의 건조·개조허가등 관련업무는  
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,
- 기업지원과 소관 승강기관리 관련업무,  
농산지원과 소관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에  
대한 사업시행인가 등은

시·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,  
시·군에 재위임 했던 사무를 재위임 조항에서 삭제하여  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로 시·군에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 
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